

22082

P. R 0 0

자재 분	지방행정청 장 순	건축과 강 심 성	전화번호 구내 319	근거서류정수일자
건축지도계 담 임	건축과장파 장	도시계획국장 장	제 2부시장	시 장
6/11	6.11	6/2	전경	6/2

市長 申 錫 載

제 2038.1
친결무정
외의
호

관 서 명	사 회 과	보 건 사 회 국 장	보 존 년 한
안 일 일	1963. 6. 11.	시 행 년월일	1963. 6. 21.
류 호	2038.1	전체통제	종 결
유 신 조			발 신

7월 6.20

제 목 첩거민 수용소에 대한 경고문 게시

1. F.V 63 첩거민 수용소를 영등포구 구로동에 33동(396세대 수용분)을 건립 하였습니다.
2. 이미 첩거하여 일부는 수용하고 아직 수용되지 않은 공가(空家)가 있는바 본 공가(空家)에 첩거민 아닌자가 무단 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으로 첩거민 수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성이 있어 이러한 무단 진입자를 축출하고 벌한과 같이 경고문을 게시로써 하오니 재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 고 문 1963. 6. 21.

본 수용소는 첩거민에 한해서 수용키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정당한 입주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 수용소에 입주 할 수 없는바 금후 무단 입주 합치는 의법 조치 할

POR

것이오니 양지 하지 않.

처벌 범위 ..

형법 제319조(주거 침입. 회거 불응) 1. 사람의 주거, 간수하는 처
태,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 집에 침입한자는 3년 이하의 징
역 또는 ~~15,000원~~^{1,500원}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전항의 장소에서 회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자도 전항의
형과 같다.

형법 제322조(미수범). 본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형법 제367조(공익 건조물 파괴)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자
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~~300,000원~~^{10,000원}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罰.

1963. 6. .

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

2-2